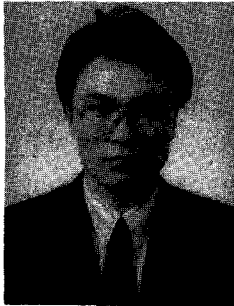


세무칼럼

세무회계에서의 복식부기의 기능



한철호 <공인회계사·삼덕회계법인>

1. 복식부기란 무엇인가

복식부기(보통 “부기”라 하면 복식부기를 칭한다.)란 한 거래(transaction)에 대하여 이중으로 기록함으로써 일정시점에서의 자산상태 및 일정시점에서의 자산의 변화를 초래하게 한 수입 및 지출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장부기록의 한 형태이다.

쉽게 풀이하면, 일정시점에 저수지에 고인 수량(水量)은 일정지역에 일정기간에 걸쳐 내린 총강우량에서 수로를 통하여 배출될 물의 총량을 차감한 양과 같다.

즉, 일정기간의 저수지수량 증감 = 일정지역 일정기간 동안의 총강우량 - 일정기간의 배수량이란 산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위 산식에서 좌변은 대차대조표를 통해서, 우변은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복식부기에서는 한 거래가 차변, 대변에 이중 기장이 됨으로써 자체 검증이 가능하게 된다.

근래에는 부기(이는 장부기록의 약자임, Book

복식부기에 의하면 총자산, 순자산, 이익 등의 산출이 신속·정확하게 되므로
응능·응익 원칙의 준수를 위해서는
복식부기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

Recording)라는 용어대신 회계 또는 회계정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회계(Accounting)란 부기(Book Recording)가 단순한 장부기록이란 뜻밖에 없음을 비하여 ‘책임지다, 설명하다.’(Account for)에서 유래한 용어로 주식회사에 있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전문 경영자가 주주로부터 수탁한 경영책임에 대한 보고, 즉 수탁 경영책임에 대한 보고에 중점을 둔 용어이다.

회계정보란 회계라는 개념이 보다 확장된 것으로 주주에 대한 보고는 물론, 은행을 포함한 채권자, 노동자, 과세 당국, 지역 사회 등 기업에 대한 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내포한 용어이다.

2. 세무회계에서의 복식부기의 기능

세무회계에 대한 복식부기의 기능내지 역할을 알기

위해서는 만약 복식부기제도가 없다면 과세가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짐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물론, 복식부기가 없었더라면 이에 대체되는 시스템이 고안되었겠지만 아마도 복식부기만큼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시스템이 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회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아집일는지 모르지만 복식부기의 발명을 화폐나 불의 발명에 비견하는 학자들도 많다.

복식부기가 세무에 미친 영향들중 중요한 것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i) 복식부기가 발명되지 않았다면, 현재 조세 부과와 기본원리인 응능(應能)·응익(應益)에 의한 과세가 힘들어지거나 상당한 훼손을 입게 된다.

응능의 원칙이란 조세 부담능력에 맞게 조세를 부과한다는 원칙으로 복식부기 용어로 말한다. 총자산 또는 순자산(자기자본)에 맞게 과세한다는 원칙이며 응익의 원칙이란 수익을 받은 정도에 따라 즉, 복식부기 용어로 말한다면 순이익에 맞게 과세하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복식부기에 의하면 총자산, 순자산, 이익등의 산출이 신속·정확하게 되므로 응능·응익 원칙의 준수를 위해서는 복식부기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복식부기의 도움이 없는 응능·응익의 원칙이란 실현이 불가능한 하나의 단순한 원리·원칙에 불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복식부기를 채택하고 있는 법인세의 경우 응능·응익 원칙에 의한 과세가 비교적 엄격히 시행되고 있으나 복식부기가 불완전하게 채택되고 있는 소득세의 경우 응능·응익의 원칙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고 추계과세의 잔재가 많이 잔존하고 있다.

자기의 능력·수입에 맞지 않는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가 많다는 이야기이다.

ii) 복식부기의 채택여부가 직접 영향을 미친 과세 제도로서 법인세법상의 순자산 증가설과 소득세법상의 소득원천설을 들 수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액 합계에서 법인의 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액합계는 차감시킨 순자산의 증가(1의 용어를 빌린다면 “총강수량·배수량”)을 순이익을 파악하여 이에 대하여 과세를 행하게 된다.

그러나, 소득세법에서는 총강수량 및 배수량의 파악이 불가능하여 계측이 가능한 총강수량 및 배수량을 토대로 과세를 행하고 있다.

계측이 가능하다(measurable)는 것은 과세당국이 스스로 파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총강수량·배수량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입장에서 계측이 가능하여 과세하겠다는 항목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다.

순자산증가설이 조세이론상 응능·응익의 원칙에 부합하고 조세의 생명인 공평성을 기할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원천설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체언이라 하겠다.

순자산 증가설을 채택할 경우 복식부기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사실 또한 두말할 나위도 없다.

iii) 복식부기의 채택은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한 충분조건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필요조건은 될 수 있다.

현행의 소득세법하에서도 일정소득(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외형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장부기록대로 인정받기 위해서 외형대비 일정비율(신고기준률) 이상의 소득을 신고하도록 하는등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복식부기의 의무화와 이에따른 소득의 인정이 곧 공평과세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거래(transaction)의 실질과 동떨어진 장부기록이 공평과세의 실현과 거리가 먼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는 복식부기외에도

- ① 금융실명제.
- ② 소득세 신고시 정부결정방식에서 법인세와 동일한 자진신고 납부로의 변경.
- ③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제도의 철폐 혹은 범위 축소.
- ④ 소득표준률 제도의 폐지.
- ⑤ 영수증 주고 받기 철저.
- ⑦ 금전등록기 사용 의무화
- ⑧ 소득세의 종합과세제도의 이행 등 제도가 필요하다.

이에대한 설명은 상당한 지면이 필요하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20%를 넘어서고 있고, 특별회계·기금등 포함할 때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이 200만원에 육박하고 있는 이때 조세저항을 피하고 조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복식부기 제도를 포함하여 상기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첨언해 둔다.